

30초만 생각하면 청렴한 세상이 됩니다.

청탁금지법



청탁 하기전 잠깐!
금품 받기전 잠깐!
딱! 30초

청탁금지

법이 연고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청렴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모두가 꿈꾸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청탁금지법'이 만들어 갑니다》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1. 부정청탁 금지

-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금지
- 부정청탁 시 부정청탁 관련자 제재

2.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 포함)
- 금품등 수수 시 관련자 제재
- 기준금액 초과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3. 위반행위 신고 및 보호·보상

-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장치 마련
-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포상금 지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년 9월 28일

생활에 유익한 법무상식

2018년 9월

발간등록번호
78-6460000-000457-06

2018년 9월 (제311호)

생활에 유익한

법무상식



전라남도

법령정보 이용안내

법령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law.go.kr>
- 도·시군 및 타시도 자치법규
• <http://www.elis.go.kr>
- 공기업·출연기관 규정관리시스템
• http://211.39.94.161:8088/law_rule

이용가능한 법률정보

- 법제처(www.moleg.go.kr)
최근제·개정법령, 입법예고사항, 판례속보
- 대법원(www.scourt.go.kr)
사건검색, 최근개정법령, 판례속보
- 넷로(www.netlaw.co.kr)
판례를 대법원, 하급심, 헌법재판소로 구분 제공
- 대한민국법률정보(www.lawkorea.com)
입법예고, 법률만화 등
- 전라남도 법무행정서비스(law.jeonnam.go.kr)
법무행정정보, 무료법률상담, 행정심판 등
- 법누리(yeslaw) : 입법예고, 법률뉴스 등
- 법무부,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특허청, 국회도서관, 노동부 등

자치법규 접속방법

- 전라남도 홈페이지를 통한 접속
• 전라남도청 → 정보공개 → 법무행정서비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클릭
- 전라남도 행정포탈을 통한 접속
• 자치법규 정보시스템(ELIS) 클릭

도 정 방 침

-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

- 1. 활력있는 일자리 경제
- 1. 오감만족 문화관광
- 1. 살고 싶은 농산어촌
- 1. 감동주는 맞춤형복지
- 1. 소통하는 혁신도정

독자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실은

제·개정되는 새 법령과 자치법규를 도민에게 신속히 알리고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매월 법무상식지를 편집 발간·배부하고 있습니다.

「법무상식」지는

독자 여러분의 관점에서 설계하고 통합하여 개개인 필요와 욕구에 맞게 맞춤형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선해야할 사항 및 개인별 법률체험사례 등 법무상식지를 알차게 꾸밀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더욱 유익하고 충실한 「법무상식」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무상식

- 편집에 참여한 사람들
• 법무담당관 박화현
• 법제팀장 채희섭
한아름, 조신웅, 최지선, 정상원, 위영초
- 보내실 곳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실
TEL : (061)286-2623 FAX : (061)286-4740 · (행)2623



법무상식

CONTENTS

www.jeonnam.go.kr

2018년 9월 통권 제311호

새로운 판례 2

법령해석사례(법제처) 29

행정심판 재결사례 58

생활법률 상담사례 69

법무단신 79

시행법령 103

솔로몬의 재판 108



◆ 약사법 제31조 제4항의 의약외품 제조의 의미와 판단방법

* 대법원 2016도20406

약사법상 의약외품의 제조를 신고사항으로 하고, 품목별로 허가를 받게 하는 등 제조 판매에 관한 엄격한 법적규제를 하는 이유는 의약외품의 직간접적인 약리작용으로 사람 또는 동물 등의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과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 제조연월일, 성분 등을 의약외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도록 하여 의약외품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약사법 제31조 제4항의 '의약외품의 제조'라 함은 의약품 이외의 물품으로서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물품을 산출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의약외품의 포장을 제거하고 재포장한 경우가 의약외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품의 성분과 외관, 제조시설 및 제조방법, 제품 포장의 표시 내용, 판매할 때의 설명 및 선전내용, 사회 일반인의 인식가능성 등을 고려하되, 재포장 과정에서 원래 제품의 변질가능성이나 제품명, 제조연월일 등 재포장 표시에 의하여 원래 제품과의 동일성이 상실되어 별개의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 등도 함께 참작하여 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피고인들이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멸균장갑 등의 의약외품의 포장을 개봉하여 새로 포장한 후 피고인 회사에서 새로 제작한 것처럼 명칭, 유효기간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제조 판매한 약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장갑 등의 개봉과 포장 과정에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 등이 첨가되지 않았고 그 제품의 성상이나 용법 등이 변경되지 않아 의약외품의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 그러나 의약외품 제조에 관한 약사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재포장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회사를 제조업체로 오인하거나 원래의 제품과의 동일성을 상실하여 별개의 제품으로 여길 가능성이 커 피고인들의 재포장행위를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위자료와 별도로 퇴직 및 취업제한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6다220099

국가인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들이 다니던 회사를 사직하고 원고들의 학력, 경력에 상응하는 수입을 얻지 못한 재산상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도 피고의 불법행위 당시 위 원고들의 경력에 상응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위 원고들이 사직한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후 그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얻은 실제 소득을 공제하거나 또는 그것이 분명치 않을 때에는 위 원고들이 일용 노임조차 얻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용 노임 상당 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위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였어야 한다.

☞ 피고(대한민국) 수사기관의 불법체포와 가혹행위에 의하여 남매간첩단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아들과 사위인 원고들이 간첩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고 학력이나 경력에 상응하는 직장에 다니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들의 퇴직 및 취업제한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 사안임

1.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적극)
2. 학원법 시행령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댄스(체육 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괄호안 단서 규정의 의미와 효력

* 대법원 2015두48655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서 예능 분야 내 예능 계열에서 무용을 교습하는 학원에 해당하고,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기예 분야 내 기예 계열의 평생직업 교육학원에 해당한다.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학원법상 평생직업 교육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에, 관할 행정청은 그 학원이 소관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춘 이상 신고 또는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① 학원법상 학원의 일반적인 등록 요건을 갖추고 ② 성인을 대상으로 ③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과 학원법상 평생직업 교육학원에 동시에 모두 해당할 수 있게 된다. 만일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의 의미를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무도학원업의 범위 단서 규정’의 의미도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 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 학원을 두 법령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모두 불가능해지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댄스학원을 개설·운영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부당한 해석 결과를 방지하는 한편, 두 시행령 단서 규정의 형식과 연혁 등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상호 조화롭게 이해하려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무도학원업의 범위 단서 규정’은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이 학원법상 학원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나아가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도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이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의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학원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 교육학원으로 등록 신청한 것에 대해 피고가 학원법 시행령 (별표2)의 단서 규정을 이유로 등록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행정청이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는 등록·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고 신청인이 설립·운영하려는 댄스학원이 해당 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등록·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결론을 같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사례
-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결론 도출의 논증에 있어서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은 모법의 위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관 조희대의 별개의견1과, 두 시행령 단서 규정이 상호 모순·충돌하여 조화로운 해석이 불가능하므로 법질서의 통일성 원칙에 따라 두 시행령 단서 규정을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2가 있음

◆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및 제53조 제1항의 ‘1주 간’의 의미, 구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 여부

* 대법원 2011다11239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적용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법률 규정의 제·개정 연혁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입법 취지 및 목적,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인식과 기존 노동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휴일근로 시간은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 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 제1항의 ‘1주 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 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 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 ☞ 피고는 원고 측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주 40시간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원심에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사안에서, 위 법리를 전제로 중복지급을 부정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일부)한 사례
- ☞ 다수의견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상 1주 간 근로시간 규제는 휴일근로에도 당연히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시간은 1주 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는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의 반대의견이 있고, 그 외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상옥의 보충의견,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이 있으며,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신의 보충의견이 있음



◆ 피고인들이 공무원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홍보나 영업을 한 것 외에 구체적인 청탁이나 알선을 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단순히 높은 수수료율만으로 그와 같은 청탁이나 알선이 있음을 추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8카합10106

피고인들은 A파비스 및 ○○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방송 음향장비의 설치와 유지 보수, 영업 등의 행위를 실제로 수행하였는바, 이는 A파비스나 ○○을 위한 사무가 아니라 피고인들 자신을 위한 사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관급공사에 납품되는 제품의 선정 및 그 제품의 유지 보수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A파비스 및 ○○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지 이를 두고 관급공사에 납품되는 제품을 선정하는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지방 관급공사에 방송 음향장비를 납품하는 업계에서는 물품 판매업체가 지역 대리점에게 제품의 설치, 유지 보수, 영업 등의 업무를 맡기고 납품대금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들 또한 제품 판매업체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품을 납품받아 공사현장에 설치하고 하자보수기간 동안 해당 제품을 유지·보수하는 등의 사업을 수년간 정상적으로 영위하여 왔다. 전북 지역의 일부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피고인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방송·음향장비에 관한 상담이나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인건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비, A/S비용, 부대비용, 세금 등을 고려하면 납품대금 대비 40% 이상의 수수료를 받아야만 지역 대리점에서 이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 대리점에게 이윤이 발생하는 적정 수수료율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으나, ① ○○ 대표이사 또는 검찰과

당심 법정에서 인건비나 유지 보수비용이 수수료 중 약 70% 이상(전체 납품대금의 약 30~40%)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진술한 점, ② △△△코리아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에 사실상 독점적으로 방송 음향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주식회사 ○○○○의 제품을 납품 설치하는 경우에 납품대금의 37%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있는 점, ③ A파비스 직원 D은 원심법정에서 ##미디어가 진행한 방송 음향장비 설치공사는 4~6명정도 인원이 일주일 정도 공사해야 한다고 진술한 점, ④ 전주시청 통신공사 공사감독관 F는 검찰에서 △△△코리아에서 ○○의 제품을 설치하는 데 직원 2명이 일주일 정도 공사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A파비스와 ○○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에 상당 부분은 제품의 설치와 유지 보수 등의 업무에 지출된 비용에 대한 보전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A파비스와 ○○은 다수의 지방 관급공사에 자사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다른 방송 음향장비 납품업체에 비하여 지역대리점에게 높은 수수료율을 인정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평균적인 수수료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피고인들이 담당공무원들에 대해 A파비스, ○○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추인하면, 피고인들과 같은 지역 대리점과 제품 납품업체 사이에 지역 대리점의 이윤을 좀 더 보장해주기 위해 자율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정한 경우에도 이를 불법적인 알선의 대가로 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덧붙여 A파비스나 ○○은 피고인들과 같은 지역 대리점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어떤 방식으로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고 제안하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즉, A파비스와 ○○은 업계의 일반적인 사업방식에 따라 피고인들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제품이 지방 관급공사에 납품 설치되면 내부적인 수수료 기준, 제품을 설치하는 데에 든 시간과 비용, 다른 제품 납품업체들이 지역 대리점에게 인정해준 수수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뿐, 그들 사이에 피고인들이 담당공무원에게 청탁 내지 알선하여 회사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 망인이 집에서 프로포폴을 투여하다가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채무 존부

* 광주고등법원 2017나14245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78507 판결, 대법원 2003. 11.28. 선고 2003다35215, 35222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 내지 ‘피보험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발된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은 2016년 1월 4일 13시경 광주 소재 자신의 집(아파트) 안방 침대 위에 누워 사망해 있었는데, 당시 망인의 손등에는 링거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고, 링거 병은 비어 있었으며, 방안에서 발견된 프로포폴 병 41개 중 26개가 비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이 상당 기간 동안 스스로 링거 주사를 이용해 적지 않은 분량의 프로포폴을 투약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프로포폴은 마취유도 및 유지 등에 사용되는 정맥용 마취제로서 과량투여 시 호흡억제가 나타낼 수 있고, 문헌에 따르면 프로포폴의 혈중 치료농도는 0.78~15mg/L인데 마취에 사용되는 위 약물의 치료농도 범위는 호흡관

삽입 등의 방법으로 호흡유지 상태에서의 농도 범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치료농도 범위라하더라도 호흡관 삽입 등 호흡유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독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호흡유지가 없는 자가투여시에는 프로포폴의 혈중농도가 0.22~5.5mg/L이면 부작용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그런데 망인의 경우 부검 결과 심장혈액에서의 프로포폴 함량은 30.54mg/L, 말초혈액에서의 프로포폴 함량은 24.10mg/L으로 측정되어 체내함량 농도가 혈중 치료농도와 자가투여로 인한 사망 농도의 범위를 훨씬 상회하였다.

게다가 망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투약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이에 대해 피고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죄행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범죄행위를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로 삼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그 자체의 위법성 때문에 보험정책적인 의미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까지 보상하는 것은 보상 대상 사고의 우연성을 요구하는 보험제도의 기본적 성격과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비록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사유 중 하나로 '형법상의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여기에는 형법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처럼 특별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전제로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위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위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헝가리에서 의대재학중인 입영대상자에 대하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가 가능한 연령이 지났다는 이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을 불허한 사안에 대하여 병역의무의 형평성, 병역자원의 적정한 유지 및 관리라는 공익에 비추어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224

헝가리에서 의대재학중인 입영대상자에 대하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가 가능한 연령이 지났다는 이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을 불허한 사안에 대하여 병역의무의 형평성, 병역자원의 적정한 유지 및 관리라는 공익에 비추어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적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 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국외여행 규정은 제13조 제4항, 제5조 제1항 [별표1]에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사유를 나열하면서 제11호에서 제1호 내지 제10호 이외의 사유로 한 국외여행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사람’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국외여행 규정은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라 할 것이고,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 제2항에 의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시 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지 아니

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국외여행 규정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위 규정 [별표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서 부득이하게 즉시 귀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중 이미 수업료와 숙소비용을 납부하였다는 사유는 국외 여행기간의 허가가 만료됨을 알고 있었음에도 미리 비용을 납부한 원고의 결정에 의한 것이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천식은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거나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아니므로 이 사건 국외여행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판단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16년 9월 12일 외국의 학교에 입학하였고, 외국의 학교 재학 중이라는 사유로 28세까지 입영연기를 받았으며, 원고가 귀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23년 9월에 졸업할 예정이다. 원고가 이 사건 연장허가신청을 하면서 주장한 사유는 사실상 유학을 이유로 한 국외여행기간 연장신청에 해당하고,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외국의 6년제 의과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27세까지 졸업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은 28세까지만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을 뿐이다.

병역법 제33조의7,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 제1항 제4호, 제5호에 의하면, ‘올림픽 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은 보충역으로 편입되어(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특기활용 봉사활동 등 일정한 업무만을 담당하고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술·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은 역종 및 복무형태에 관한 것으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와 그 제도의 취지 및 내용 등이 다르고, 병무청이 운동선수에게 대회 참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입영을 연기하여 주는 것 역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와와는 그 제도의 취지 및 내용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원고를 비롯한 누구라도 위 조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충역으로 편입이 가능하다. 병역법은 이외에도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 검사 전담의사 등 병역 의무자의 특기를 고려하여 보충역으로서 다른 형태의 복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의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 병역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무사관 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될 수 있으므로 원고 역시 28세까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의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될 수 있었으므로 운동선수들과 복무형태를 다르게 규정하였다고 하여 헌법상의 평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병역의무의 형평성 및 병역 자원의 적정한 유지 및 관리라는 중대한 공익인데, 이 사건 연장허가신청을 허가한다면 병역의 형평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를 저하시켜 병역자원의 적정한 유지 및 관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에 관하여 정부 보조금을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장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한 사건

*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307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 3, 제10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등 규정에 따른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은 청년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업능력 등을 반영하여 교육훈련 및 고용지원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운영이 위탁되어 있다.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의 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그 세부사항을 규정할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며, 피고는 운영기관이 지원금 약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약정해지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에 따른 처분 등에 위반하거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청년 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의 위임에 따라 피고가 마련한 청년취업아카데미 세부운영지침 제28조 및 이 사건 약정에 포함된 표준 운영약정 조건 제9조에 의하면, 운영기관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지원금을 취업아카데미 운영 사업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및 기타 관련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피고는 약정을 해지하고, 비용의 환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률 및 그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들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들 및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사건 환수 조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아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나 이 사건 약정의 표준 운영약정 조건 제9조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0580 판결 참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인바, 그에 이르게 된 데에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반자가 그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등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환수 조치 금액에 해당하는 8,321만3,882원을 사업의 목적과는 관련 없이 부당하게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환수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점검의 계기가 된 민원 제기는 원고에 근무하였던 직원으로부터 제기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였으며 점검 결과 실제로 민원제기 내용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보조금 부당사용 내역이 적발되었다.

- ②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원고의 원장 D이 위 8,321만 3,882원에 관하여 사업과 관련 없이 부당하게 지출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각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③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참조), 위 각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 아이돌보미인 원고들이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을 상대로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서비스기관의 아이돌보미에 대한 미지급 법정수당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0308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들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제공 주체인 아이돌봄 지원법상의 서비스 기관으로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지급받고 이용자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들이다. 이에 피고들은 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접 면접을 거쳐 원고들을 채용하고 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위 근로계약서에는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활동 의무의 내용과 그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당 지급 의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아이돌보미로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은 대체로 피고들에 의해 정해지고, 나아가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들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① 원고들이 피고들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부동문자로 원고들의 기본적인 업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 ② 원고들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수행하는 시간과 장소는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 요청을 접수하는 피고들에 의해 정해지고, 원고들은 피고들이 알려주는 시간과 장소에서 서비스를 수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 ③ 일단 원고들이 위 시간과 장소에서 서비스를 수행하겠다고 수락한 이후에는 이미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이에 구속된다.
- ④ 피고들은 원고들이 아이돌봄 서비스 수행 과정에서 해야 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월례회의, 간담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지시를 내렸고, 그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 활동일지 작성,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건강검진 서류 제출, 보수교육 이행 등 아이돌봄 서비스 수행 외의 업무도 지시하였다.

- ⑤ 피고들은 원고들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활동일지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제기하는 민원 및 독자적인 모니터링 활동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업무 수행을 감독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통보를 받고 수락하여 시간 및 장소가 정해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3자를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계산 아래에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실제로 제공한 아이돌봄 서비스 수행 시간에 비례하여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어 지급받는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자신의 노무제공을 통하여 추가적인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고, 원고들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른바 4대 보험에도 가입시켜 주고 있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리기사가 차량을 도로상에 세워둔 채 가버리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 주유소에 정차한 다음 112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돼 긴급피난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울산지방법원 2017고정1158

1. 긴급피난 일반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년 7월 24일 저녁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끝나자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대리운전 기사가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한 곳은 울산 북구 편도 2차선의 도로이다. 위 도로에는 갓길도 없고, 2차로 옆에는 가드레일이 있다. 위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나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해서 차가 주차하여 있으리라 예상하기는 어려운 도로이다. 정차된 이 사건 승용차 옆을 지나가는 다른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면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도 하였다. 위 도로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로서, 제한속도는 시속 70km/h인데, 사람들이 80km/h로 운전하기도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위 정차 장소에서부터 운전하여 약 300m 떨어진 앞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7월 25일 오전 12시 46분경 112로 신고하여,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그냥 가버렸는데 위험할 것 같아서 주유소 안쪽으로 운전해서 들어왔다고 통화하였다.

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 즉 ① 대리운전 기사가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하여 둔 도로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새벽 시간에 장시간 승용차를 정차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사정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거리는 약 300m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임박할지도 모르는 사고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둔 후 경찰에 112로 자발적으로 신고하면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진술한 사정 ④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과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형량하여 볼 때 후자가 보다 우월한 법익에 해당하는 사정을 알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도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검사가 의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인이나 경찰에게 연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지인이나 경찰이 새벽시간에 음주운전 차량을 이동하여 줄 기대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아니함에도 지인이나 경찰에 대한 연락행위를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취지여서,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경찰에게 음주운전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는 업무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선거 관련 대화를 녹음한 후 이를 자신이 지지하던 후보에게 알려 준 사안에서 설령 피고인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사례

* 울산지방법원 2017고정1158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승무원으로 근무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공개 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년 4월 1일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가 전화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일행인 서△△, 허□□, 이◇◇ 등과 **노동조합 조합장 선거 관련하여 대화를 하자 휴대폰으로 위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를 녹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4월 2일경 버스 안에서 이어폰을 착용하고 위 대화 내용을 청취한 후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인 이▽▽ 등에게 녹취된 대화 내용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녹음 및 대화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한 행위가 위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령 피고인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거나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대화를 녹음한 후 이를 자신이 지지 하던 직장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에게 누설한 것으로, 녹음된 대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



◆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방법

* 대구고등법원 2017나23456

1. 관련 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그 계약상의 명의인이 언제나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급인이 도급인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의 합의하에 계약상의 수급인 명의를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 표시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그 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공사대금도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등 스스로 계약당사자가 될 의사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11963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0768판결 등 참조).

2. 판단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는 E, D와 이 사건 공사의 대금 등 그 구체적 계약조건을 협의하였던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처음 알게 된 D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D의 말을 믿고 확실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4억원을 제공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공사가 예정된 공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피고는 D에게 그 진행을 독촉하였던 점, ④ 피고는 2015년 7월 중순경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을 독촉하는 등의 조치 없이 F에게 위 철골공사 등 잔여 공사를 맡겼던 점, ⑤ 이 사건 도급 계약서에는 ‘계약보증금, 선금, 기성금 및 지체상금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음과 아울러 그 ‘준공예정년월일’에 관한 기재 내용도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함께, 비록 갑 제15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D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도급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라는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2017년 2월 16일자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623 판결 등 참조)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위 D의 일부 증언 등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4년 8월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D를 위 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으로 하는 데 대하여 D와 피고 사이의 의사합치가 존재하였거나 적어도 피고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원고가 아니라 D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으리라고 보기에 충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살핀 바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고 명의로 작성하는 것을 양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원고 명의로 작성된 사정 내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정 등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당시의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사례 1

민원인 -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할 수 있는지?

●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잡수입의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할 수 없습니다.

●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그 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로 한정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수명 단축으로 인한 주거기능의 상실과 주택소유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래에 공동주택의 수선공사에 사용될 금액이라는 점에서 결국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주체인 건물소유주 자신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강제적 금전납부의무(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5헌바81 결정례 참조)입니다.

그러므로 관리규약은 소유자 및 사용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하는 것으로 그 규정 내용은 사적자치의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것은 금전납부의무의 강제 대상이 아닌 사용자에게 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합니다.



사례 2

민원인 - 단독주택에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질의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의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단독주택에 설치된 경우, 해당 건축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합니다.

● 이 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9호가목에서는 노인 관련 시설로서 주·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하면서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이하 “재가장기요양기관”이라 함)은 소방시설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9호에서 노유자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자력(自力)대피가 어려운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 안전을 강화하여 노인 등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법제처 2017. 10. 27. 회신 17-0428 해석례 참조) 65세 이상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참조)를 대상으로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단독주택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정소방대상물로 관리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단독주택에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11호나목에서는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을 규정하면서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단독주택에 설치된 경우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단독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시설법과 「건축법」은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이 다른바, (소방시설법 제1조 및 「건축법」 제1조 참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서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을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같은 별표 제1호에서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노인복지시설을 단독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건축물을 노유자시설에서 제외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용도별 구분을 명확히 하고, 하나의 건축물이 복수의 용도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입법 취지와 목적이 다른 소방시설법 등 개별 법령에서 노유자시설의 범위를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것과 다르게 규율하는 것까지를 금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소방시설법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건축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내용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례 3

민원인 -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하천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하천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변경되지 않고 10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 이 유

「하천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하천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함) 관련 규정들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천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하천기본계획”에 완성제방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제1호),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제2호),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

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에 해당하는 토지(제3호) 등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천기본계획은 하천구역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천법」에서는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 등에 관해서는 유효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33조제7항, 제50조제4항 및 제53조제1항제3호 등),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천기본계획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하천법」 제25조제1항에서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은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간적 단위가 10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일 뿐,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을 상실시키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하천기본계획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함)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기본으로 수립해야 하는데(「하천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2호) 수자원법에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수자원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위해 하천기본계획과 수자원법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변경되지 않고 10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하천기본계획만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면 수자원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 4

민원인 -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인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이러한 폐기물 소각행위가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에 해당하는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이러한 폐기물 소각행위가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 답

이 사안의 폐기물 소각행위는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 유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 함)의 부과·징수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문언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함께 규정형식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에게 폐기물 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5 제2호에서는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각열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6에서는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요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원순환기본법」의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회수율에 따라 폐기물 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이 될 수 있을 뿐 해당 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당시 국회에 함께 발의되어 검토되었던 다른 관련 법률안에서도 공통적으로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과 같이 규정되었는바, 이는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취지였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순환이용”을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상 중간처분시설인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은 그 에너지 회수율과 상관없이 “순환이용”에 해당하여 이러한 에너지 회수활동이 결부된 폐기물 소각행위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각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회수한다는 이유로 폐기물 소각행위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같은 법 제21조제2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5 제2호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각열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회수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그 적용대상이 없어지게 되어 해당 규정이 무의미해지고 법령 내 규정 상호간의 적용관계가 모순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례 5

민원인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당 0.5회 이상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에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공용부분에 반드시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유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설비규칙”이라 함) 제11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하 “신축 공동주택등”이라 함)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같은 규칙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설비규칙 별표 1의4에서는 자연환기설비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세대”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고(제1호 및

제2호), 같은 규칙 별표 1의5에서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환기기준을 “세대”의 실내로 공급되는 풍량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제1호)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제3호) 등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신축공동주택 등의 각 “세대 내”에 설치할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설치 장소나 설비기준 등을 정하고 있고 각 세대 외의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환기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축공동주택 등의 각 세대 외의 공용부분에 반드시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110조제12호에서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설계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2조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건축설비규칙 제11조를 위반한 설계자 등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 참조)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신축공동주택 등의 각 세대 외의 공용부분에도 건축설비규칙 제11조에 따라 환기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형벌 규정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 6

보건복지부 - 의료인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의료법」 제21조제3항제6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의료법」 제21조제3항제6호에 따라 의료인 등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로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의료인 등은 환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로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유

법을 해석할 때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됩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의료법」 제21조제3항에서는 의료인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내주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

하고 있는데 그 사유별 성격을 살펴보면,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환자의 친족 등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환자의 기록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환자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 등을 제공하거나(제4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 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제9호) 등 특정 주체가 법령상 규정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환자의 기록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등으로서 환자의 동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환자에 관한 기록을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친족 등이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21조의 체계를 고려할 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료인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보주체인 환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의견

「의료법」 제21조제2항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엄밀하게 보호하고 있는 입법 취지와 같은 조 제3항에서 의료인 등의 환자의 개인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한 형식 및 「형사소송법」 제106조·제215조·제218조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소송법」 제218조가 규정되어 있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제6호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업무정지처분사유가 발생한 한의사가 기존 한의원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 한의원을 개설한 경우 이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6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질의요지

한의원을 개설한 한의사가 「의료법」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같은 법 제56조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고 그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한의원을 폐업하고 그 한의원을 개설하였던 시·군·구가 아닌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새로운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새로운 한의원의 관할 행정청은 해당 한의사에게 한의사 폐업 전 업무정지 처분 사유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새로운 한의원의 관할 행정청은 해당 한의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유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료인이 업무정지처분 전에 해당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그 새로운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의료법」의 관련규정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함)을 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같은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는 주체는 “의료인”입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시장 등이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를 “의료기관”의 행위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인의 의료업은 반드시 개설된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 지므로 그 의료업 정지의 사유를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의료법」 제64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상대방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의료인”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을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업만을 정지시키고 그 의료인이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업은 허용하려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볼 경우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새로운 의료기관을 다른 지역에서 개업하는 방식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인바,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의 의료업을 제재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의료법」 제64조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여 부당합니다.

※ 법령정비의견

이 사안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40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2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의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8

국민권익위원회 -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고 부당이득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 관련)

● 질의요지

공익신고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보조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가 이루어졌으나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것으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것으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익

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서는 보상금 지급 사유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같은 호를 근거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는 보상금 지급 사유의 하나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제1호),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제2호) 및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제3호)로 “처분”(제1호 및 제2호)과 “판결”(제3호)을 구분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같은 조 각 호의 보상금 지급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판결이 없더라도 공익신고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와 이에 대한 불응 시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를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부당이득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를 보상금의 지급 사유로 추가할 것인지 여부를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령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9

국토교통부 - 조례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을 정하면서 일정한 범위의 상행위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면서 금지되는 상행위의 대상에서 일정한 범위의 상행위를 제외할 수 있는지?

●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금지되는 상행위의 대상에서 일정한 범위의 상행위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이 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49조제2항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하 “특별시등”이라 함)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는 행상이나 노점에 의한 상행위(이하 “노상 상행위”라 함)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이 모든 종류의 노상 상행위가 일괄하여 금지되는 도시공원의 장소적 범위만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원녹지법 제49조제1항에서는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제1호) 등 도시공원 등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금지 행위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노상 상행위(제1호) 및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제2호)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을 특별시장등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같은 조 제2항은 각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노상 상행위 또는 애완견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노상 상행위의 종류와 형태는 매우 다양하여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가 있는 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에 수반되는 노상 상행위 등과 같이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지 않으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공원녹지법 제49조제2항은 지역 사정을 반영하여 ① 노상 상행위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의 장소적 범위뿐만 아니라 ② 도시공원에서 금지 또는 허용되는 노상 상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도 함께 정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특별시장등의 조례로 노상 상행위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의 장소적 범위뿐만 아니라 금지 또는 허용되는 노상 상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도 함께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공원녹지법 제4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10

행정안전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 따라 국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

●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국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습니다.

● 이 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을 “국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모두 포함”(「국유재산법」 제6조제1항)하는 개념인바, 「국유재산법」에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사용허가”로,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대부계약”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제2조제7호 및 제8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국유재산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같은 규정의 “대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대부계약”(제2조제8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허가”(제2조제7호)까지를 포함하여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서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제2호),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 여부를 그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제1조)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제1호),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제4호), 민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제5호) 등의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 따라 국가가 이러한 공익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산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사용료 면제 여부를 행정재산의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사례 11

환경부 등 - 원재료에 사용된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재의 범위에 다른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로만 사용되는 제품을 그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가 포함되는지?

●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재의 범위에 다른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제품을 그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라 함) 제18조제1호에서 규정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비”란 돈이나 물자, 시간, 노력 따위를 들이거나 써서 없애는 것을 말하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소비자”란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도18765 판결례 참조)을 말한다는 점에서 원재료를 사용하여 다른 재화를 생산하는 것은 생산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소비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비자기본 법령에 따르면 소비자의 범위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원재료,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를 제외하고 있음(『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단서 참조)을 고려할 때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서 물품 등을 원재료 등의 용도로 자기의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같은 호에서 규정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 또한 해당 제품을 자기의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은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27736호로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서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범위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로 한정하였는데, 그 취지는 중간 원료의 포장재는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재활용·재사용이 가능하고, 부담금 납부에 따른 업계의 부담과 제품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중간 원료의 포장재를 재활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6호로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 12

민원인 -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자료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3자의 범위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 관련)

● 질의요지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이하 “관계자료”라 함)를 제출받은 후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계자료를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함)에게 이송하는 경우,

- 가. 금융감독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 나. 이 사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금융감독원장에게 관계자료를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의 “이 법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지?

● 회 답

- 가. 이 사안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 나. 이 사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금융감독원장에게 관계자료를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의 “이 법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문언상 “당사자”는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직접 참여하는 자를 말하는 반면 이러한 당사자 이외의 자를 총칭하는 의미로 “제3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계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관계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개인정보처리자”를 관계자료의 제출에 관한 법률관계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제3자”란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개인정보처리자와 행정안전부장관을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2008년 개인정보보호법안(정부 제출안) 제정 이유서 참조)

그리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제1조)과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같은 법의 위반행위 등을 조사·확인하기 위해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두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관계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관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법제처 2017. 12. 4. 회신 17-0506 해석례 참조)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관계자료를 제3자에게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이 법에 따른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 법에 따른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3항은 금융감독원장(「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에서는 금융감독원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임을 전제로 함)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법률”에 따라 직접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것일 뿐,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행정안전부 제공) 중 제63조 관련 부분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관계자료를 금융감독원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받은 관계자료에 개인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제3자 제공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가 적용될 수 있는데, 같은 규정에서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이 같은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관계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 법에 따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항에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신용정보회사 등에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 외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단순히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사하던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이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관계자료에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한편 이 사안과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이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련 민원을 이송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받은 관계자료까지 함께 그 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안과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이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받은 문서가 아니라 민원과 관련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관계자료까지 다른 행정기관으로 이송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에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례 1

【2018-56,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11. 28.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18,401,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이행강제금(9,200,000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11. 28.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18,401,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 소재에서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자 지상2층(1층 일반음식점, 소매점 / 2층 주택) 본 건물에 연접한 조립식 패널의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불법건축물'이라 한다)을 증축하였다가, 2017. 6. 22. 피청구인에게 위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피청구인이 현장조사를 하고 원상복구 시정명령(4회)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7. 11.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이행 강제금(18,401,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같은 해 12. 26. 이 사건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완료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법 위반사항을 조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조치기간을 넘겼지만 시정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주장하며, 2018. 2. 2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11. 28.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8,401,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 구 인

이 사건지 무허가 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이 법률에 무지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태양광 시공업체와 ○○시청 공무원의 말 중 청구인에게 유리한 말만 믿었던 점이 가장 큰 문제였으며, 조립식 패널 건물의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패널 등을 위치나 방향을 이동하지 않고 하부의 조립식 패널만을 철거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여러 시공업체에서 이를 거부했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일련의 행정절차만을 고집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과 조치기한을 도과하였으나 꾸준히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고자 노력하여 현재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정함에 있어 참작사유에 해당하느바,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하므로 취소(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

- 1) 청구인은 2016. 6. 16. 이 사건 불법건축물 소재지의 본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하였느바, 건축허가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도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것이 불법건축물인줄 몰랐다는 주장은 맞지 않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불법건축물에 대해 4회에 걸쳐 원상복구 시정요구를 하면서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도 임시 삭제해 주는 등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까지 약 5개월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감사원,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시 감사과 등에 피청구인의 불법건축물 시정요구의 부당

합과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 사유로 감사를 의뢰하며 시간을 낭비하고도 이 사건 불법건축물을 기일 내 철거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2) 법을 집행하는 피청구인으로서 이 사건 불법건축물의 건립과정에 있는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으며, 「건축법」 제80조 제6항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거했다고 해서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경감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가. 「건축법」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
나. 「○○시 건축조례」 제35조

5. 판 단

가. 사실인정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2016. 6. 16. ○○시 ○면 ○○리 ○○○○ 토지(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소유하며 2016. 12월경부터 거주하다가 2017. 1. 17. 사이에 식자재보관 창고용의 조립식판넬 구조의 이 사건 불법건축물을 무단 증축(152㎡)하였다.
- 2) 피청구인은 2017. 6. 22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다.

- 민원요지

- ○○시 ○면 ○○리 ○○○○번지에 위치한 ○○식당은 현재 본 건물 양쪽으로 판넬을 이용하여 본 건물 부지만큼 증축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음. 화장실과 요리 조리엔 필요한 식자재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 중인 것으로 본 건물 양 옆으로 지어진 판넬 건물은 불법으로 증축한 것 같음.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형평성도 어긋나기에 불법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시정조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3) 청구인은 2017. 6. 24. ~ 6. 26. 이 사건 불법건축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17. 6. 28.부터 이 사건 처분 시까지 청구인에게 4회에 걸쳐 이 사건 불법건축물의 자진 철거명령을 하고,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요구하였다.

- 처분사전통지에 따른 청구인 의견(2017. 8. 22.)

- 약 1개월 이후에는 철거예정이니 건축물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불법 건축물이라는 글자 “위반건축물” 삭제 요청(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 이라고 표시되어 대출이 안 되니 이를 삭제해 주면 대출 받아 철거명령 이행)

- 2017. 10. 31.까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사항 임시 삭제

5) 피청구인은 2017. 11.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18,401천원¹⁾ 부과

6) 청구인은 2017. 12. 26 이 사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2018. 2. 26. 이 사건 이행강제금(18,401천원)을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였다.

1) 과세 시가표준액(기준가액 670,000원×구조지수 55%×용도지수 80%×위치지수 86%×잔가율 95.5%×면적 152㎡×1)의 50/100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건축법」 제79조 제1항 및 제80조 제1항, 제6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0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로서,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2)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행강제금은 위법부분의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행을 강제하고, 불법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수단으로서 위법부분에 대한 시정이 가능한 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①청구인은 이 사건 불법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청구인에게 시정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②청구인이 이 사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증축한 면적은 152㎡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감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건축법」

제80조 제6항은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더라도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이 없다.

- 3) 다만, 행정청이 위 법규 소정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경위나 위반의 정도, 행정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따져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하여야 하는바, ① 청구인은 농촌의 면(面) 지역에서 거주하며 이 사건 불법건축물(창고 등)을 주택의 부속용도로 쓰고자 무단 증축하였던 점, ② 청구인이 건축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과오를 뉘우치며 이 사건 불법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추가 행정처분을 막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등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이루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사례 2

【2018-64, 조상땅 보상에 관한 미보상처분 무효확인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2. 6. 청구인에게 한 답변(조상땅 보상에 관한 관계기관의 답변)은 무효임을 확인하다.

1. 사건개요

전남 ○○군 ○○면 ○○리 ○○. 임야 1,725㎡, 같은 리 ○○○ 임야 1,468㎡, 같은 리 ○○ 답 1,729㎡(이하 이 3필지 모두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이○○ 등 10인이 각 지분 10분의 1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는 ○○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로 사용되고 있다. 이○○ 외 9인 중 한 분의 후손인 청구인이 민원신청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조상땅 보상을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2. 6.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이 사건 저수지 축조 시 어떠한 방법으로든 보상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조상땅 보상에 관한 미보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2. 6. 청구인에게 한 답변(조상땅 보상에 관한 관계기관의 답변)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저수지로 사용하고 있다. 국토부든 지자체든 개인 사유지를 저수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개인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고 해당 토지의 명의를 변경하고 사용하여야 하나, 그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적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저수지로의 무단 사용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 1) 청구인은 저수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보상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그 민원의 내용은 보상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 사건 민원은 어떠한 구체적 신청의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며, 위 심판 대상은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심판 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2) 이 사건 각 토지는 등기부 등본상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등 10인이 공유자 지분 10분의 1씩을 소유하고 있다.
- 3) ○○저수지 축조(1969년) 당시 「○○제 건설 추진위원회」 위원 정○○, 총무 서○○씨 면담결과에 따르면 ○○제는 1969년 밀가루 사업으로 축조된 저수지로 망 서○○(위원장) 등 7명의 위원이 주축이 되어 축조 하였으며
- 4) 저수지 축조시 수면에 잠기는 ○○ ○○리 ○○번지, ○○번지 등 토지보상은 소유자인 함평이씨 문중(이○○ 외 9인)에서 ○○저수지 하단 토지와 교환을 요구함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리 24번지, 25번지, 26번지를 1마지기당 벼 9가마에 별도 구입하여 저수지 면적에 해당하는 이○○ 외 9인(함평이씨 문중) 토지와 교환하고, 관련 문서를

○○제 건설추진위원장인 서○○씨가 자택에 보관해 오던 중 천정 누수로 훼손하여 현재까지 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함평군으로서는 청구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이 사안 보상금지급 등의 처리를 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함평군의 입장을 답변하였는바, 이 사안 민원에 대한 답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5. 관계법령

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6. 판 단

가. 사실인정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일대에 1969. 12. 다음과 같이 해보 금산 저수지 축조되었다.
 - 해보 ○○제 건설 추진위원(7명) : 위원장(故서○○), 총무 서△△, 위원 故서□□, 故이○○, 정○○, 정△△, 故서●●
-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7. 10. 25 이 사건 각 토지를 ○○군에서 무단 이용한다고 주장하며, 그 보상을 요구하였다.
- 3) 이에 피청구인은 2017. 11. 6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으나 축조 시 보상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다.
- 4) 그 이후로도 청구인은 2017. 11. 10. 2018. 1. 7., 2018. 2. 6.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으나 축조 시 어떠한 방법으로든 보상이 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별도 보상을 할 수 없음’(이하, ‘이 사건 답변’이라 한다)이라고 답변하였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격여부

-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에는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을 말하고, 무효등 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행정 각 부처의 장 등이 일반 국민의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함은 물론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누2441 판결).
- 3)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의 요지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피청구인이 무단으로 저수지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그 보상을 요구한 것이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답변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에 대한 보상이 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관계의 분쟁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문제로서 이에 대한 다툼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2018. 2. 6.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답변통지는 청구인의 권리 의무에 대해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책 배

Q

물품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채 200만원 상당의 의류 8점을 택배 회사에 배송 의뢰했는데 운송 도중에 분실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느 정도의 피해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A

택배 관련손해배상액은 소비자가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200만원이라고 기재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가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 운송장에 물품가격 미기재에 따른 손해배상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3항).

- ① 전부 분실된 경우 :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 ② 일부 분실된 경우 :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 ③ 운송물이 훼손된 경우 : 운송물이 훼손되었으나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 ④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 :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택배요금액의 50%를 곱한 금액 (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요금액×50%)을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장 기재 요금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 ⑤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 운송장 기재 요금액의 200%를 배상합니다.
- ☞ 운송물의 분실, 훼손 또는 연착이 택배 회사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택배 회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4항).



Q

김치 1박스를 택배 의뢰하였으나 배송되지 않아 택배 회사에 문의하였더니 김치포장이 부실해 운송 중에 김치박스가 터져 오히려 다른 운송물이 훼손되었다며 김치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없나요?

A

택배 회사는 이 운송물이 김치임을 알았으며 운송물의 포장에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상태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인수하였으므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택배 회사는 김치 값에 상당하는 가격을 보상해야 합니다.

◆ 배송 제외 물품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 ☞ 택배 기사는 운송물의 포장에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7조제2항).
- ☞ 또한, 택배 회사는 ①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② 운송물의 포장에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③ 운송물의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④ 대형 상품인 경우, ⑤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에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송물의 수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택배표준약관」 제10조).
- ☞ 택배 회사는 위와 같은 경우에 물품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을 수락하여 운송 중 택배 회사의 과실로 운송물이 부패되거나 파손되었다면 택배 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가격이 500만원인 카메라를 택배 의뢰하였으나 운송 도중 분실되어 받지 못했습니다. 택배 회사에 배상을 요구했더니 해당 금액 전부를 배상해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할증 요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가격 전부를 보상받을 수는 없나요?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택배 취급 금지 품목입니다. 택배 회사가 카메라의 수탁을 수락해서 할증요금을 지불한다고 해도 카메라를 분실했을 때의 최고 배상액은 300만원이므로 그 이상의 보상은 어렵습니다. 만약 운송장에 물품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보냈다면 최대 50만원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고가의 물품을 택배로 보내야 할 경우에는 꼭 운송장에 물품의 가격을 기재해야 하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품의 경우에는 택배 이용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고가의 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 ☞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는 택배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물품의 가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 또한 손해배상한도액과 관련하여 택배 회사는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택배 회사가 손해배상을 할 때에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고,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 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됨을 반드시 명시해 놓아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5조제1항제5호).
- ☞ 택배 회사는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 회사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배송을 수락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배상액인 300만원을 초과해서 보상은 어려우므로 고가품이나 귀중품의 경우에는 택배이용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택배 의뢰한 운송물이 운송 도중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물품이 분실된 경우에도 택배 요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택배 의뢰한 운송물의 분실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운송물의 분실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고객에게 택배 요금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택배운임 환급과 청구

- ☞ 운송물의 분실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택배요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택배 회사가 이미 택배요금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1조제1항).
- ☞ 그러나 운송물의 분실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택배 요금의 전액 및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택배표준약관」 제21조제2항).





받는 사람이 없어 택배 기사가 특정장소에 물품을 두고 갔는데 물품이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받는 사람 부재 시 택배 기사가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후 분실 되었다면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상호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으나 분실되었다면 보상청구는 어렵습니다.

◆ 부재 시 택배 물품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 ☞ 택배 회사는 운송물을 배달할 때에 받는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부재하여 대리인에게 배달한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13조제1항).
- ☞ 택배 기사는 받는 사람의 부재로 운송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방문일시, 문의할 연락처, 그 밖에 운송물을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13조제2항).
- ☞ 택배 물품은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 또는 직계가족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과 약속 후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택배를 받을 시간에 집을 비우게 될 경우 경비실, 이웃집 등 물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장소를 택배 기사에게 미리 알립니다.
- ☞ 택배 기사가 임의로 아파트 경비실이나 이웃집에 택배를 맡긴 뒤 물건이 없어졌다면 택배회사가 배상해야 하지만,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맡기는 것에 동의했다면 물건 분실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택배 기사가 실수로 화물칸을 열어둔 채 자리를 비워 택배 물품을 분실하였습니다. 택배 기사의 중대한 실수로 택배를 분실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 기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의 보상방법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는 택배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2항제1호).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3항).
- 전부 분실된 경우에는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 일부 분실된 경우에는 인도일의 인도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의 보상방법

- ☞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 회사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물품 가액의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4항).



택배 기사가 운송물의 훼손 사실을 확인하고도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택배 회사가 택배 운송물의 분실 및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에 연락하여 상담한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도움 받기

- ☞ 택배 회사와 면담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택배 회사와 협의해서 그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에 연락하여 상담한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의 업무를 하는 기구로서, 소비자와 택배 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2014. 3. 21. 발령·시행)에 따라 해결을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
-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상담 신청을 하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당사자에게 원만한 합의를 권고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7조).
- ☞ 피해구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특별한 사안의 경우에는 90일까지 합의권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8조).



서예작품 액자를 택배 의뢰하면서 발송 당시 액자의 유리가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해 택배 회사에서 요구하는 면책확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예작품까지 파손된 채 배송된 경우에도 면책확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파손면책이란 운송을 맡긴 물품이 파손되더라도 택배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특약의 일부인데 일부 업체들이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용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파손면책에 서명했지만 운송도중 물품의 안전 운송에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하지 않은 한 택배 회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단, 파손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이를 확약하는 면책확약서를 준 경우에는 소비자도 이에 대한 책임 부분을 감안해야 합니다.

◆ 택배 회사의 면책 사유

-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 택배 회사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택배표준약관」 제22조).
- ☞ 고객이 면책확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그러나 고객이 파손면책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 파손면책이란 운송과정에서 변질, 파손 가능성이 높아 취급이 곤란함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택배를 의뢰한 경우 운송 중 제품 파손이나 품질 변형을 초래하더라도 택배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고객과의 협의사항을 의미합니다.
 - 운송물의 인수 시 소비자가 이른바 『파손면책』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운송물 훼손파손 또는 분실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택배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나, 「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1항에서는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택배 회사의 일방적인 『파손면책』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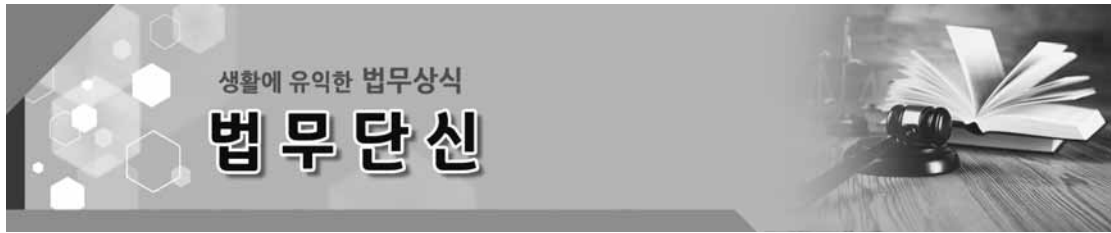
택배 운송 중 훼손, 분실, 연착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인수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즉시 통보하지 않으면 책임소재의 규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물품 훼손·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택배회사에 즉시 통보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배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기간

- ☞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3조제1항).
- ☞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 운송물의 일부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인도예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3조제2항).
- ☞ 택배 사고 사실을 알면서 숨긴 경우에는 택배 회사의 책임은 5년간 지속됩니다.
 - 택배 회사 또는 사용인이 운송물의 일부 분실 또는 훼손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3조제3항).



결혼이민자도 범죄피해 구조금 받는다

앞으로는 결혼이민자도 우리 정부가 지급하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는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주소지나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면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체류자격을 가진 결혼이민자도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행법은 외국국적의 결혼이민자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인 경우 상호보증에 있는 경우에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결혼이민자 역시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이고 그 가족도 범죄피해로 인한 고통을 함께 겪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혼이민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피해로 결혼이민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 결혼이민자 역시 유족구조금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결혼이민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결혼이민자 본인이나

배우자·자녀가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장해·중상해 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장해·중상해 구조금을 피해자 본인에게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구조금 신청 후 지급 결정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범죄피해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를 신설해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등 구조금 관리가 어려운 이들이 적절히 구조금을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려견 키운다고... 전세계약 일방파기 '법적 책임은'

세입자가 반려견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아파트 주인이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임대조건에 '반려견 사육 금지' 조항이 없었다면 세입자가 반려견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우모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4억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집주인인 김모씨와 양모씨에게 계약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우씨의 반려견 때문이었다.

우씨가 반려견 3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집주인 측은 "새 아파트에 반려견이 웬말이냐"며 계약을 무르겠다면서, 같은 달 28일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를 공탁하겠다'는 내용을 우씨에게 통지했다.

이후 집주인 측은 법원에 계약금 4,000만원을 공탁했고, 우씨는 같은 해 3월 공탁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계약한 아파트에서 살 수 없게 된 우씨는 김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우씨는 "집주인 측의 통지는 해약금에 기한 해제의 의사표시로 봐야 하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제6조에 따라 계약금 4,000만원의 2배인 8,000만원을 줘야 하는데도 4,000만원만 상환했으니 4,000만원을 더 달라"고 주장했다. 우씨와 집주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7조에는 '손해배상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집주인이 책임져야 할 배상액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씨 등은 “우씨가 계약 당시 반려견 3마리를 키운다는 말을 하지 않아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우씨가 김씨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청구소송(2017나63995)에서 최근 1심보다 700만원이 많은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으면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김씨 등은 2017년 2월 28일 목적물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기에 우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체결 당시 김씨 등은 우씨에게 ‘몇 명이 거주하느냐’고 물었고 우씨는 ‘2명’이라고 답했다. 이후 김씨 등이 다시 ‘집이 넓은데 2명만 거주하느냐’고 묻자 우씨가 ‘그렇다’라고 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상 반려견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고 김씨 등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 또는 우씨에게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것이 조건’임을 고지한 바 없으며 ▲김씨 등의 질문에 ‘반려견과 거주하는 것이냐’라는 취지가 내포돼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라도 반려견을 기르는 것이 금기시되지 않는 데다 ▲우씨의 개들이 모두 소형견인 점으로 볼 때 우씨가 집주인인 김씨 등에게 반려견 양육에 관한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 등 집주인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계약 이행 거절 후 그해 4월 같은 아파트에 대해 정모씨와 보증금 4억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기간 중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세우는 등 성향상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거절한 것일 뿐 보증금 증액 등과 같은 목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우씨가 그 해 3월 새로운 아파트 계약을 보증금 3억4,000만원에 임차했는데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과 보증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계약체결을 위한 수고를 들인 것 외에는 별다른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씨가 새로 계약한 곳의 위치가 자신이 원하던 곳이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우씨가 새로 계약한 아파트의 1㎡당 보증금 액수가 기존 김씨 등과 계약한 곳보다 다액이라고 주장하지만, 김씨 등의 아파트의 1㎡당 보증금 액수는 380여만원이고, 새로 계약한 곳의 1㎡당 보증금 액수는 360여만원으로 오히려 기존 건물이 다액이기에 손해배상예정액으로 4,000만원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제 입법’ 의무는 없다

국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전과기록 말소’와 ‘충분한 보상’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라는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들을 구제할 입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는 국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 의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정모씨 등 433명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권고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제 조치를 입법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회를 상대로 낸 입법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306·2013헌마43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정씨 등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로 병역을 거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이들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 “한국 정부가 자유권 규약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6년과 2011년 “대한민국은 신도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충분한 보상 등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Views)를 우리 정부와 정씨 등에게 통보했다. 정씨 등은 이를 근거로 2011년 이번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를 존중하고 고려해야 하지만,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가 규약 당사국의 국내법 질서와 충돌할 수 있고 그 이행을 위해 각 당사국의 사회적·정치적 상황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 입법자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의 구체적인 내용에 구속돼 그 모든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우리 국회에 이 사건 견해에 언급된 구제조치를 그대로 이행하는 법률을 제정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 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전과기록 말소 등의 구제조치를 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규약 당사국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위원회는 규약 당사국이 규약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취한 조치 등에 관하여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국가 간 통보사건 및 개인통보 사건을 접수·심리하며, 일반논평을 통해 자유권규약에 대한 해석을 제공한다. 자유권규약상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개인은 국내 권리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자유권규약위원회에 개인통보를 접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접수된 통보를 심리 후 해당 국가의 규약 위반 여부 등을 결정해 당사국과 통보인에게 견해를 송부한다.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간 분쟁은 권한쟁의심판 대상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의 분쟁은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거제시의회가 자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거제시장이 모복지재단과 위탁갱신계약을 체결한 것은 시의회의 동의권과 의결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낸 권한쟁의심판(2018헌라1)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기된 경우 주장의 당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내부적 분쟁은 헌재가 관장하는 지자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62조 1항은 헌재가 담당하는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를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하면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과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거제시의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무
단신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시급'만 대외적 구속력

소상공인연합회가 주휴시간을 포함시켜 2018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산출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의 '시급'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구체적인 법률 관계를 규율하지만, '월 환산액'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14일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부분을 취소하라”며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2017구합79257)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최종 고시했다. 고용부는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 된다고 표기하며, 한 달간 근로시간에 유급 휴일인 주휴 시간 8시간을 포함시켜 209시간으로 판단했다.

주휴 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받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평일(5일) 동안 8시간씩 일한다면 휴일 중 하루는 8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유급 휴일 시간이 노동시간에 포함되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고, 반대로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면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유급 휴일 시간을 제외한 174시간이 월 근로시간이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은 131만220원(174시간×7,530원)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저임금법 규정대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 ‘시급’ 부분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지만, ‘월 환산액’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월 환산액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에 근거해 고시한 부분은 최저임금 ‘시간급’에 한정되고, 시간급 부분만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며 “월 환산액 부분은 최저임금법이 법령을 보충해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도록 위임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월 환산액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내지 행정지침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원고들을 비롯한 사용자나 근로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턱없이 비싼 ‘오피스텔 · 원룸 관리비’ 잡는다

오피스텔과 원룸 등 집합건물 관리비를 잡기 위해 정부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피스텔과 원룸 등은 청년 · 신혼 부부의 주거공간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관리비가 턱없이 비싸거나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오후 영등포구 ‘서울 하우징랩’에서 시민단체와 오피스텔 소유자, 상가 상인, 주택관리사,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민달팽이유니온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집합건물법은 빌라와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한 동의 건물이 여러 부분으로 독립돼 사용되는 경우 적용하는 법률이다. 전국의 집합건물은 56만동에 이르며 이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12만7,000동이 서울에 있다.

이날 간담회는 집합건물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 · 청년 · 학생 · 저소득층 등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주택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고 회계 부정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으나, 집합건물법에는 회계와 관련해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문제가 돼 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그동안 집합건물의 경우 행정청의 후견적 개입의 근거가 없어 청년 세입자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20년간 장사를 하는데 관리단이 상인에게 관리비를 공개한 적이 없었다”, “오피스텔은 입주민을 위한 관리가 아니라 관리비를 뜯어내기 위한 관리를 한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에 박 장관은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과 같이 서민의 삶의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에서 그동안 과도한 관리비 부과,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과 같은 문제로 거주자와 상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깊이 공감한다”며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일정 인원 이상의 소유자와 세입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 부당한 관리비 징수 및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관리비 등 금전 사용 내역에 대한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소유자와 세입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개하도록 해 알 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입주자가 관리비 사용을 직접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규모 건물에도 구분점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식의 매장을 만들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음 편히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건물 리모델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단집회 의결 정족수 완화도 추진된다. 지금은 복도, 계단, 옥상 등 공용부분을 리모델링하려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75%를 충족해야 하며 수직 증축은 구분 소유자의 100% 동의가 필요하다.

박 시장은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텔과 같은 다양한 집합건물이 새로운 주거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지만, 여전히 집합건물은 공공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런 관리 사각지대는 특히 청년, 신혼부부 같은 서민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어 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 법령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서울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 구축을 위하여 앞으로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 “초등학교 출석번호, 남학생만 앞 번호 지정은 성차별”

초등학교에서 출석번호를 지정할 때 남학생에게는 앞 번호를, 여학생에게는 뒷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여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성차별적 관행이라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서울 A초등학교 학생의 어머니 B씨가 “남학생의 출석번호를 1번부터, 여학생은 51번부터 지정하는 것은 여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며 A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학교 교장에게 “학생 출석번호 부여 방식을 개선해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B씨는 “A학교가 남학생은 출석번호 1번부터, 여학생은 출석번호 50번부터 부여하고 있다”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A학교 교장은 “지난해 말 4~6학년 학생과 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2018학년도 출석번호 부여 방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 남학생에게 앞 번호, 여학생에게 뒷 번호를 부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남학생 출석번호를 앞 번호, 여학생을 뒷 번호로 부여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남녀 간에 선·후가 존재한다는 차별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 성차별적 관행”이라며 “이런 관행을 다수결로 채택했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학교에서 남녀구분 없이 가나다순으로 출석번호를 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방식으로 학교행정이나 학급운영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학교의 남학생 앞 번호 지정은 여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5년에도 남학생에게만 앞 번호를 부여하는 관행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여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남학생에게 앞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 행위라는 점을 각 교육청에 다시 한 번 전달했다.

한편 대전의 C초등학교에서도 '남학생은 1번, 여학생은 30번부터 출석 번호를 부여한 것이 성차별'이라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C학교는 인권위 조사가 시작되자 성별 구분 없이 가나다 순으로 출석번호를 부여해 차별을 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혼모가 자신의 성(姓)으로 키우던 아기,父가 인지하면

홀로 자녀를 출산해 자신의 성(姓)을 따라 아이 이름을 짓고 키우는 미혼모와 그 자녀의 정체성과 법적 생활의 안정을 위해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781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혼모가 자신의 성에 따라 아이 이름을 짓고 키우다 자녀의 친부가 인지를 하게 되면 부성주의 원칙에 따라 자동으로 아이의 성이 친부의 성을 따라 바뀌기 때문이다. 부모가 협의를 하면 이전 성을 그대로 쓸 수 있지만, 법률 비전문가인 미혼모로서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친부의 인지 후 아이의 성이 바뀐 뒤에야 뒤늦게 부랴부랴 법원에 아이의 성본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친모인 미혼모 등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이 같은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미혼모 A씨도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아이 아빠인 B씨는 A씨가 임신하자 “나는 모르겠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생명을 지울 수 없었던 A씨는 홀로 아이를 낳아 키웠다. 아들의 이름을 짓고 출생신고를 하면서 A씨는 아이에게 자신의 성을 쓰도록 했다. 그러나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A씨는 B씨에게 양육비라도 받기 위해 법원에 인지소송과 함께 양육비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 결과 아이는 B씨의 친생자로 인정됐지만, 인지소송 승소의 결과로 아이의 성이 자동으로 친부인 B씨의 성을 따라 자동으로 변경된 것이다. A씨가 소송을 내면서 아들의 성을 그대로 유지하게 해달라고 신청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A씨는 아들이 태어나 10년 넘게 쓰던 성이 바뀌어 혼란스러워 한다면 B씨를 찾아가 이전 자신의 성을 그대로 따라 쓸 수 있도록 합의해 달라고 했지만, B씨는 “그게 무슨 상관이나”며 무시했다. 결국 A씨는 아이의 성본 변경을 위해 법원을 다시 찾아야 했고,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A씨의 아들은 B씨 성으로 살아야만 했다.

미혼모 C씨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C씨 역시 양육비를 받기 위해 인지소송을 냈지만, 승소하면 아이의 성이 자동으로 아이 아빠의 성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인지소송을 낼 때 미리 아이의 성을 기존과 같이 자신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다. 다행히 C씨는 아이의 성을 되돌리기 위해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아이 아빠를 거둬 찾아가 아이가 이전 성을 쓸 수 있도록 합의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해야 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인 오영나 법무사는 “인지소송을 진행하면서 청구취지에 종전의 성(엄마 성)을 그대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적으면 거의 대부분 엄마 성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판결이 나오지만,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인 미혼모가 이를 잘 알지 못해 이 같은 청구취지를 누락한 채 그대로 인지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며 “인지소송 결과가 나온 뒤에야 아이의 성이 바뀐 사실을 알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 민법이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781조는 1항에서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해 원칙적으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조 5항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합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지소송 과정에서 부모가 아이의 성을 협의해 엄마 성을 따르기로 합의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런 협의 자체가 없었던 때에는 부성주의 원칙에 따라 아이의 성이 아버지의 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이의 성이 아버지의 성을 따라 바뀌게 되면 이를 되돌리기 위해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미혼모 등 아이 엄마가 아빠를 만나 종전 성을 쓰게 해 달라고 부탁해 합의를 이루거나, 법원에 아이의 성을 종전과 같이 되돌려 달라고 성본변경허가신청을 내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또 수개월이 걸린다. 그 기간 동안 아이는 자신의 성이 바뀐 이유를 놓고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성을 부모 협의로 정하는 것으로 바꾸거나 적어도 혼외자 인지 과정에서만이라도 아이가 종전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부모 협의나 법원의 허가를 통해 친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것이 자녀의 정체성은 물론 법적 안정성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한국젠더법학회 회장인 신옥주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민법 제781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성주의 원칙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반해 위헌”이라며 “자녀의 성은 부모의 합의를 원칙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개정된다면 인지 후 자녀 성의 결정도 부모 합의가 원칙이 될 것이므로 양육모와 자녀의 복리가 고려되는 성의 변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첫 ‘민영소년원’ 이르면 2023년 문 연다

이르면 2023년 국내 첫 민영소년원이 탄생한다. 지난 2010년 12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최초 민영교정시설인 소망교도소가 출범한 이후 일반 교도소 출소자들에 비해 낮은 재범역률을 보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 민영소년원 도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보호소년의 수용과 보호, 교정교육 등 소년보호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민영소년원 설치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소년보호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해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소년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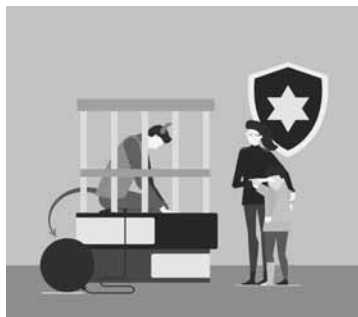
법무부 관계자는 “다양한 민간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소년 보호처분의 효과를 높이고, 소년원 확충을 통해 과밀수용을 해소함으로써 인권 보장 차원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년원의 설치·운영, 소년보호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국가의 재정 부담 또한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영소년원 설립은 세계적인 추세로, 미국은 전체 소년보호시설 1852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소년원이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민영소년원 ‘글렌 밀스 스쿨(The Glen Mills Schools)’은 우수한 교육성과와 낮은 재범률로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소년을 위탁할 정도이다.

성인 수용자만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도 국내 첫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개소해 재범률 억제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3년 내 출소자 재복역률이 국영교도소의 경우 24.7%에 이르지만, 민영인 소망교도소는 절반 수준인 12.6%에 그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에 여자소년원 2개, 남자소년원 8개 등 총 10개의 국영소년원이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돼 있다. 특히 서울소년원의 경우 지난해를 기준으로 수용정원이 150명에 불과한데도 1일 평균 246명이 수용돼 164%의 초과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전국 소년원의 총 수용률도 129%를 기록해 만성적인 과밀 수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무부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설명회 등 공모절차를 통해 민간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3년께에는 민영소년원의 운영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민영소년원의 성공적인 설립·운영으로 소년범에 대한 선도와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불량 아들, '카카오뱅크 비대면인증' 통해 아버지 몰래 대출 받았다면

신용불량자 아들이 아버지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버지 몰래 아버지 이름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인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법령이 규정한 본인확인조치를 다했다면 카카오뱅크 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대출명의인인 부친이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7가단11216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신용불량자인 아들 B씨(26)를 위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게 해줬다. 그런데 아들 B씨는 아버지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난해 9월 카카오은행에 비대면 방식으로 아버지 명의로 회원가입과 요구불 예금계좌 개설을 한 다음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카카오뱅크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분증 사진 촬영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촬영된 신분증 사본의 제출 ▲일정기간 이전에 고객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은행 예금계좌를 통한 확인 등 3가지 본인 확인 수단을 거쳐 거래를 승인하고 있다.

B씨는 자신의 휴대폰이 아버지 A씨의 명의로 되어 있던 점과 A씨의 주민등록증 원본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두가지 절차를 통과했다. 이후 다른 은행 기존계좌를 확인하는 절차도 아버지에게 용도를 숨기고 A씨의 다른 은행 계좌로 1원이 입금되면서 표시된 인증단어가 무엇인지 물어 확인한 다음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과했다.

뒤늦게 아들의 대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비대면 방식의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악용의 여지가 있기에 금융거래 명의자 본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인확인을 할 의무가 있다”며 “카카오뱅크는 영상통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은행 기존 계좌를 통한 본인 확인 방법을 사용해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에 대출약정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카카오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전자문서 및 전자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관련 법률의 규정 내용과 입법취지와 목적,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비대면 방식의 전자금융거래를 하려는 전자금융업자로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본인확인조치를 다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에 따라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해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는 명의인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뱅크로서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에서 전자금융업자가 취해야 할 실명확인방식 중 세 가지를 사용했으므로 본인 확인조치 의무를 다 이행했다”며 오히려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기존계좌를 이용한 본인 확인 방식과 관련해 A씨는 아들에게 중요한 본인 확인 수단인 ‘접근 매체’에 해당하는 인증단어를 확인하고 알려줌으로써 ‘접근 매체’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유출해 대출약정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뱅크는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대출약정 거래신청서에 된 의사표시를 A씨의 것으로 신뢰해 이를 승낙하고 대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법률효과는 계약 명의자인 A씨에게 미친다”고 판시했다.

입마개 안한 반려견, 초등생 물어… 법원 “5,300만원 배상하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이 초등학생을 물어 전주 측 보험사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의정부지법 민사6단독 왕지훈 판사는 A(10)양의 부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8442)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5,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3월 당시 일곱살이던 A양은 경기도 남양주시 인근에서 산책중이던 B씨의 대형 반려견과 마주쳤다. 당시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던 B씨의 반려견은 A양을 보자 달려들었고, 반려견의 돌발 행동에 놀란 B씨는 당황한 나머지 목줄을 놓치고 말았다. A양은 B씨의 반려견에 얼굴과 귀, 가슴 등을 물려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미술치료와 심리치료도 병행해야 했다.

전주인 B씨는 과실치상죄로 입건돼 약식 기소됐다. B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A양 측에 합의금으로 1,800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A양 부모는 성형수술과 후유증 치료에 들어갈 비용을 고려할 때 합의금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A양 부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2016년 위자료와 치료비 등 8,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왕 판사는 “B씨는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사고 당시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고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않았다”며 “사고 즉시 개를 떼어내지 못하는 등 동물의 점유자로서 보관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B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위자료 3,000만원과 치료비 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법무
단신

중소기업에 '1 : 1 법률지원'...중기부, 변호사·변리사 90명 지원단 구성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와 변리사 등 법률전문가들이 9월부터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1대 1 법률자문서비스에 나선다. 기술력은 있지만 기술 및 지재산 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형호)은 8월 말까지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중소기업 60개사를 모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 발족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태범) 소속 변호사 85명과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 소속 변리사 5명 등 총 9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모두 관련 실무경력 10년 이상을 갖춘 베테랑들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전문가들과 1대 1로 맺어져 지원을 받게 된다. 중기부는 지원 대상 기업에 9월부터 1년간 최대 500만원의 법률자문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기업에는 전액을, 매출액이 10억원을 넘는 기업에는 자문료 절반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지난해 기준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기업이다.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보호 관리역량을 보유했거나, 대기업과의 기술거래가 활발한 중소기업은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우대받는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은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 ▲기술보호관련 계약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 작성 ▲자체 기술보호역량강화 방안 자문 ▲기술탈취 분쟁·소송 관련 법률상담 △특허

심판·소송 등 법적 대응방안 제시 및 소송준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기술탈취에 대해 전문적·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업계의 인식은 부족한 상태”라며 “기존의 단순상담이나 소송대리 위주의 단기처방을 넘어 중소기업이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심층자문을 실시하고, 그 저변을 점차 확대해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이메일(ultari@win-win.or.kr)로 제출하면 된다.





[8/10 시행법령]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이제 그만! 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이렇게 바뀝니다.

영화관,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은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2018.8.10.] [법률 제15364호, 2018.2.9.,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정차 및 주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을 정차 및 주차금지구역으로 변경하는 한편, 제천 화재사건에서 보듯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도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3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22 시행법령] 학교도서관 이렇게 달라집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학생들의 독서나 자료 활용을 전문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초·중·고 모든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개선됩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 2018. 8. 22.] [법률 제15368호, 2018. 2. 2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고, 교과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등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학생들의 독서지도, 자료활용 등을 지도할 전문 인력이 없어 학교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유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학교 도서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을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하여 정한다.

[8/22 시행법령] 공연권 범위 확대로 창작자 권익을 보호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하는 경우, 입장료와 같은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저작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보호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 2018.8.23.] [대통령령 제28251호, 2017.8.22.,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커피 전문점 등을 영위하는 영업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력단련장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전통시장을 제외한 대규모 점포에서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때에는 청중 등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하는 공연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
-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6.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공연





연명치료 중단과 기존 의료계약의 존속 여부

김할머니는 2013년 암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이미 고령인 김할머니는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며, 질병의 호전은 기대하기 힘든 상태가 되자 김할머니의 자녀들은 평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해온 김할머니 의견을 존중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존엄사 반대 등의 이유로 연명치료 중단을 거부하였고, 김할머니의 자녀들은 병원측을 상대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선고하였고, 병원측의 항소를 거쳐 1년여의 재판 끝에 김할머니의 자녀들은 2015년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김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뗀 뒤에도 6개월을 더 생존하여 튜브로 영양을 제공받다가 사망하였습니다. 병원은 김할머니의 자녀들에게 김할머니의 병원비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김할머니 자녀들은 연명치료 중단 요구 이후 발생한 병원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할머니의 자녀들은 연명치료 이후 병원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 걸까요?

1. 유가족 : 우리는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였고 법원의 판결도 나왔으므로 연명치료 중단 이후의 병원비는 내지 않겠어요!
2. 병원 : 유가족의 요구대로 연명치료는 중단하였으나, 연명치료 중단 이후 사망시까지 영양 제공 등 계속 진료비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병원비는 내야 합니다!

☞ 정답은 2번입니다.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 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이하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라 함)에 이루어지는 진료행위(이하 ‘연명치료’라 함)는 원인이 되는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호전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오로지 생존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치료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례처럼 환자가 병원과 의료계약을 체결하고 진료를 받다가 미리 병원에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을 하였고, 환자의 가족 등이 직접 법원에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 중단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연명치료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의 의사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의사로 해석되므로 병원이 중단해야 할 진료행위는 인공호흡기 부착에 한정될 뿐이며 그 이외에 연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명유지를 위한 진료(인공영양공급, 수액공급, 항생제 투여 등)와 병실사용에 관한 부분은 의료계약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연명치료 중단 판결 확정 이후로도 인공호흡기 부착을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는 환자와 병원과의 의료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나2536 판결 참고).

따라서 김할머니의 자녀들은 이 사건 의료계약에 따라 병원에 연명치료 중단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연명치료중단 판결이 확정된 때까지 인공 호흡기 유지비용뿐만 아니라 연명치료 중단 후 김할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발생한 병실 사용료를 포함한 미납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9769 판결 참고)

